

特別企劃 시리즈

아시아地域工業所有權制度

- 이 글은 지난 83年 世界知的的所有權機構(WIPO)에서 아시아地域 각국 特.....○
-許廳을 통하여 調査, 發刊한 「THE SITUATION OF INDUSTRIAL PR.....○
-OPERTY IN THE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를 基.....○
-本 資料로 하여 作成한 것이다.○

◎ 第 5 回 ◎

◎ 필 리 핀 ◎

■ 工業所有權 ■

(a) 現行國內法

(i) 發 明

· 共和國 法第165號, 1947年 6月 20日; 特許廳設置, 特許關係 諸般問題를 規定 또는 그를 위한 토대로 사용, 1951年 6月 9日 共和國 法 第637號, 1983年 6月 13日 共和國 法 第894號 및 1977年 12月 14日 大統領令 第721號 및 第1263號에 의거 改正됨.

· 改正은 되었지만 特許廳以前의 特許에 대한 施行 規則.

· 大統領令 第1263號에 의거하여 1978年 5月 8日 大統領 指示書第678號

(ii) 意 匠

發明과 同一; (i)項 參照

(iii) 特徵 表示

· 1947年 6月 20日에 제정된 共和國法 第166號는 共和國 法第638號(1951. 6. 11), 第681號(1952. 5. 9) 및 第865號(1953. 6. 16)에 의해 改正되어 商標·商號·서비스 標에 대한 登錄 및 保護를 包含하고 있으며 不正競爭 및 虛偽表示에 관해서도 規定하고 있다.

· 改正은 되었지만 필리핀 特許廳以前의 商標에 대한 施行 規則

· 共和國法 第623號(1951. 6. 5制定); 檢印된 병, 상자, 통 및 기타 유사한 容器들의 使用에 대하여 規定

(iv) 其他 工業所有權

商標에 관한 法律(法第166號, 上記(iii)項 參照)은 또

한 最初 表示의 保護 및 不正競爭行爲에 對한 保護에 관해서도 規定하고 있다.

(v) 消費者 保護; 特別한 法律이 없다.

(vi) 現行 國內法の 改正; 情報가 없음

(b) 條約 加入

(i) 國際的條約

· WIPO (1980年) 加入

· 工業所有權 保護를 위한 파리協約, 리스본 決議 (1965年)(實務規定에 관한) 및 스톡홀름 決議(1980年) (管理規定에 관한)에 加入

· 特許節次의 目的上 미생물 기탁 國際的 認定에 관한 부다페스트 條約加入(1981年)

(ii) 雙方間條約; 情報 없음

(c) 特許 및 發明保護를 위한 其他 名稱들의 主要 規定

(i) 名 稱

· 發明 特許 (法第165號 7, 18 및 19條; 規則 30案)

· 實用新案 特許(法第165號, 55條; 規則 133條)

(ii) 保護를 받기 위한 要件

新規性· 發明特許에 關하여 一般的인 新規性 基準이 適用된다. 어떤 發明이 特許出願前에 필리핀에서 公知되었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使用되어진 것일 경우 또는 出願前에 필리핀에서, 또는 外國에서는 1年以上前에 特許를 받았거나 油印된 公報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特許出願以前 1年以上 필리핀에서 使用 또는 販賣되었을 경우, 또는 필리핀에서 特許出願以前에 그보다 앞서 出願하여 발급받은 特許와 同一한 內容일 경우에는 新規性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法第 165號, 9條)

· 實用新案 特許에 關하여는 지엽적인 新規性 基準

이適用된다. 어떤實用新案이特許出願以前에 필리핀에서公知되었거나使用되어진 경우, 또는國內에회람된公報에 게재된 경우, 또는 이미公知·使用또는 게재된 다른實用新案과類似한 경우에는新規性を 상실하였다고 본다. (法第165號, 55(3)條; 規則 134條)

發明 단계(進歩性)

·特許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發明은發明性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技術分野에서通常의知識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實用新案의 경우에는特許要件의發明性を 요구받지는 않는다.實用新案은發明단계의 기술은 필요하지 않다. (法第165號 55(1)條; 規則 133條)

産業上 利用可能性

·發明은利用可能한機械, 製造物 또는物質 또는方法과關聯되어야만 한다. 어떤發明을具體化하지 않는思想·原理 또는理論이나商業的生産品の製造나改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方法은特許받을 수 없다. (法第165號 7 및 8條 規則 31, 32條)

·實用新案은實際적으로有用한工具나産業的生産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法第165號, 55(1)條; 規則 133條)

(iii) 保護받지 못하는 경우

特別히 규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公共秩序·善良한風俗 또는公衆의衛生이나 복지에反하는發明은特許를 받을 수 없다. (法第165號 8條; 規則32條)

(iv) 海外에서 획득한權利나出願의效果

필리핀國民에게特許出願에 대한優先權을認定하는當事國에서同一發明을出願한者가 필리핀에 접수한發明特許 또는實用新案에 관한出願은그當事國에出願한 날을 필리핀에出願한 날로 간주하는 것과같이同等한効力を 가진다. 優先權을主張할 수 있는要件은 다음과 같다.

·그出願이外國에서出願한 날로부터12個月以内に 행하여져야 되며, 그出願의英文번역본은 필리핀에서出願한 날로부터6個月以内に 제출하여야 한다.

·필리핀에서出願한 날로부터1年以上前에世界의 어느地域에서油印된公報에 게재되었거나, 이미特許받은發明(또는出願에 앞서1年以上)을그나라에서 공공연히使用 또는販賣된發明에 대해서는特許를 받을 수 없다. (法第165號, 15 및 55(1)條 規則 56條)

(v) 公開의範圍

明細書에는發明의目的 및性質에 관한說明,

그發明이屬하는技術이나科學分野에서通常의知識을 가진者가容易하게實施할 수 있을程度로完全하고 명료하고, 간단·정확한 형식으로 그發明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發明者가發明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한 최적의 양식이 공개된다. (法第165號, 14(b) 및 (d)條, 規則62(a) 및 (b)項)

·特許 또는特許의 어떠한權利主張도明細書에要求된公開內容으로 암시하지 않으면 未消될 수도 있다. (法第165號 28(b)條; 規則 248條)

(vi) 許與 節次; 公開

出願을 하면形式 및內容 審査를 받게되고, 先技術調査도 수행된다. 出願이適合하다고決定되면, 特許가發給되고許與 받은特許의圖面 및權利를包含한事項이公報에 게재된다. (法第165號, 6, 16, 18, 및 55(1)條; 規則 87 및 144條)

*出願者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그發明이公共봉사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일 때에는 그의特許出願에 따라優先審査處理를 받을 수 있다. (施行令 1—15條, 規則 55—A條)

(viii) 獨占權의範圍

·特許權者는特許받은物品이나製品을開發, 製作, 使用 및販賣하거나産業 또는商業的 目的으로特許받은方法을使用하는獨占權을 가진다. 特許權者의 허락을 받지 못한者에 의한 이러한 행위의 실시는特許에 대한侵害로 본다. (法第165號, 37條)

·營利目的이 아닌研究, 實驗 또는教育目的으로特許發明을製作 또는使用한 경우에는侵害로 간주하지 않는다. (法第165號, 38條)

·어떠한特許라도 필리핀 영역내로 일시적 또는 우연히 들어온外國의 선박, 용기, 항공기 또는 운송수단內에서 이러한發明의使用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使用은侵害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그러한發明의使用이上記한 대상 자체 目的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필리핀내에서의販賣用 또는 필리핀으로 부터輸出用的의 물품製造를 위해使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法第165號, 39條)

·發明者로부터 그發明을賣入하거나 획득한者, 그의法定代理人이나 위임받은者 또는 그들이 지식이나 협조로 새로운發明의考案이나其他 다른特許받은 물품을 제작한者는 그것을 위해出願하기 앞서 아무런 책임없이賣入, 획득 또는製作한 특정物品을使用하거나販賣할權利를 가진다(法第 165號,

40條)

· 政府는 어떠한 特許發明이라도 政府의 目的을 위해 언제라도 使用할 수 있고 政府에 의해서나 또는 政府의 目的을 위한 그 發明의 製造 또는 使用은 侵害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特許權者는 그 發明의 使用에 대한 대가로 합당한 保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法第165號, 41條)

(viii) 存續期間 및 維持

存續期間

· 發明特許; 特許를 發給받은 날로 부터 17年間(法第165號, 21條; 規則 146條)

· 實用新案 特許; 許與日로부터 5年間 (法第165號, 58條; 規則 148條)

維持

· 發明特許의 維持를 위하여 特許를 發給받은후 4年 째부터 每年 特許料를 내야한다. 만일 特許料를 규정된 기간내에, 또는 과도한 料金으로 인정되어 6個月間의 연장기 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特許가 未消된다. 特許料 未納付로 未消된 特許는 未納된 날로부터 2年 以內에 特許料를 納付하므로써 復權될 수도 있다. (法第165號, 21, 22 및 23條; 規則 16, 152, 153, 154 및 155 條)

· 實用新案特許의 경우에는 特許料를 내지 않는다. 特許存續期間은 5年씩 두번 연속하여 연장될 수 있는데 그 實用新案이 廢止된 內에서 商業的 또는 産業的으로 使用되는 것이 證明되거나, 非使用의 경우에는 正當한 理由가 있어야 함을 規定하고 있다. (法第165號, 55(5) 및 58條; 規則 149條)

(ix) 實施義務; 非自發의인 實施權 許與 및 其他 다른 實施權 許與

實施義務

實用新案特許는 그 存續期間의 延長을 위해서는 非使用의 正當한 理由가 없으면 반드시 産業的 또는 商業的으로 使用되어야만 한다. (法第165號, 58條; 規則149條)

未實施를 위한 強制實施權 許與

· 發明特許 또는 實用新案特許의 許與日로부터 2年 이 경과한 뒤에는 다음의 理由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 던 特許에 對해 強制實施權을 許與받을 수 있다.

一 그 特許發明이 實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正當한 理由없이 廢止된 商業영역내에서 實施되고 있지 않을 때.

一 廢止된 內의 該當特許物品의 需要가 2年의 期間동

안 적당한 程度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一 特許후 2년동안 特許權者가 實施權許與를 거절했 을 경우 또는 特許權者가 제시한 條件에 의해 廢止된 內에서 새로운 거나 産業의 실행이 방해받거나 去來 또는 産業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

一 國內에서 그 發明의 實施가 그 特許物品의 輸入에 의하여 방해받거나 제한되는 경우.

一 食品 또는 醫藥品 또는 食品이나 醫藥品으로 使用 될 수 있는 製造物이나 物質에 關連된 特許 또는 公共의 衛生 및 安全에 필요한 特許. (法第165號 34(1)條; 規則 239, 240 및 241條)

公益部門의 強制實施權 許與

NEDA(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은 國家防衛, 經濟 및 公衆衛生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特許받은 物件이나 方法에 對해서 또는 그 범주내에서 언제라도 強制實施權을 許與받을 수 있 음을 規定하고 있다. (비록 特許許與日로 부터 2年이 경과하지 않은 때라도 가능하다) 이와 연관하여, 투자 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工業 計劃에 包含된 物品, 物質 및 方法은 國家防衛, 經濟 및 公衆衛生에 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法第 165號 34-A 및 34-B(1)條)

從屬特許의 強制實施權 許與

特許로 保護받은 發明이 그 보다 앞선 特許나 出願 또는 우선권주장이 받아들여진 出願의 權利를 侵害하 지 않고는 實施될 수 없을 때 그 發明이 그보다 앞선 特許發明과 다른 産業的 目的을 추구하고 있거나 그 分野에서 주목할만한 기술적진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 發明의 實施에 必要한 程度로 強制實施權이 許與될 수 있다. (法第 165號, 34-C條)

強制實施權 許與에 關한 一般 規定

· 強制實施權은 獨占排他的인 것은 아니지만, 實施權 者는 새로운 強制實施權許與를 위한 申請에 對해서는 異議를 提起할 수는 있다. 強制實施權은 許與에 關連 된 兩測에 義務와 계약이 따르며, 適當한 댓가를 지불 함으로써 許與받는다. (法第 165號, 35-B條)

· 實施權者로서 特許를 善意로 實施하는 者는 侵害의 어떠한 책임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 두가지 또는 그 이상의 特許間 分爭의 존재가 그 發明을 實施하 는 實施權者의 權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명령이나 절차도 이러한 權利를 간섭하지 못한다. (法第 165號, 35-E條)

政府에 의한 實施

필리핀 政府는 政府의 目的으로 언제 어느 것이든지 特許發明을 實施할 수 있다. 政府의 目的을 위하여 政府에 의하여 또는 政府用으로 發明을 製造 또는 使用하는 것은 特許를 침해했다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特許權者는 그 發明의 實施의 代價로 合當한 保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法第165號, 41條)

(x) 讓渡 및 實施權許與

讓渡

· 特許나 發明(實用新案 包含)과 關聯된 權利는 상속 또는 유산으로 讓渡나 移轉될 수 있다. 讓渡는 分割되지 않은 全體로 또는 特徵지워진 영역별로서만 可

能하다. (法第165號, 50 및 51條)

· 讓渡는 書面으로 해야하며 公證人이나 그 밖에 다른 인정된 관리앞에서 認證을 받아야만 한다. 讓渡가 되던 登錄原簿에 記錄되고 記錄事項은 官報에 게재된다. 만일 讓渡이후 3個月以內에 또는 계속적인 구매나 처당에 앞서 特許廳에 登錄하지 않으면 어떠한 購賣者나 처당권자에 대하여 實効를 발휘하지 못한다. (法第165號, 52 및 53條)

實施權許與

特許의 實施權 許與도 登錄原簿에 記錄될 수 있다. (法第165號, 53條)

(xi) 職務發明: 特別한 規定이 없다. <계속>

本會主要實行業務

11月の 메모

- | | | |
|---------------------------------------|--|--|
| 2日 ◇ 意匠公報 第498號 發刊 | 출구 | 절환회로」選定 보도의뢰 |
| 4日 ◇ 第57回 工業所有權研修講座(9日까지) | ◇ 第528回 이 週의 優秀發明 「감글류 수업을 주제로 한 차의 제법」選定 보도의뢰 | 25日 ◇ 實用新案公報 第745號 發刊 |
| ◇ 實用新案公報 第742號 發刊 | ◇ 意匠公報 第500號 發刊 | ◇ 意匠公報 第502號 發刊 |
| 6日 ◇ 特許公報 第1117號 發刊 | 18日 ◇ 商標公報 第288號 發刊 | ◇ 工業所有權 巡廻 研修講座 (釜山·大邱) 및 企業特許 管理啓導(28日까지) |
| 7日 ◇ 第527回 이 週의 優秀發明 「鉛管은수보일러」選定 보도의뢰 | 19日 ◇ 商標公報 第289號 發刊 | ◇ 公開實用新案公報 第70號 發刊 |
| 9日 ◇ 第21回 發明教室 | ◇ 工業所有權 判例(85-10) 發刊 | 26日 ◇ 意匠公報 第503號 發刊 |
| ◇ 意匠公報 第499號 發刊 | ◇ 정신등록 상표집(5·6집) 發刊 | ◇ 特許公報 第1120號 發刊 |
| ◇ 工業所有權 登錄目錄(85-9) 發刊 | ◇ 商標公報 第290號 發刊 | 27日 ◇ 意匠公報 第504號 發刊 |
| 13日 ◇ 第56回 機械·金屬部門 간담회 | 21日 ◇ 實用新案公報 第744號發刊 | 28日 ◇ 意匠公報 第505號 發刊 |
| ◇ 特許公報 第1118號 發刊 | ◇ 意匠公報 第501號 發刊 | ◇ 明振興委員會 개회 |
| ◇ 實用新案公報 第743號 發刊 | ◇ 工業所有權 國際세미나 관제인사초청 오찬간담회 | 29日 ◇ 日本工業所有權 專門家 초청강연회 |
| 15日 ◇ 審査一般基準 發刊 | 22日 ◇ 特許公報 第1119號 發刊 | ◇ 유럽地域工業所有權研修團 개국 |
| ◇ 公開實用新案公報 第68號 發刊 | ◇ 第529回 이 週의 優秀發明 「카세트와 라디오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스위치 | ◇ 第530回 이 週의 優秀發明 「벽걸이용 휴지통」選定 보도의뢰 |
| 16日 ◇ 유럽地域工業所有權研修團 | 에 수신할 수 있는 스위치 | 30日 ◇ 意匠公報 第506號 發刊 |